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 5급 상당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변경 계획 1차 재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5급상당(진료의사) 채용시험 시행 변경계획(자격요건, 연봉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1차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 6. 18.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담당업무)	근무 부서
서구보건소 내과진료실 진료의사	지방일반임기제 (5급상당)	1명	임용약정일 로부터 2년간	○ 서구보건소 통합진료실 업무 - 내과진료 - 건강진단(결과)서의 판정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의뢰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기타 보건소 업무 지원 - 감염병 대응 업무 등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에 의거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근거법령

-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3(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별표 13

3. 응시자격

-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의료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20세이상

○ 자격제한(공고일 현재 기준)

채용예정 분야	변경 前 자격요건	변경 後 자격요건
서구보건소 내과진료실 진료의사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공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의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공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의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우대요건 ○ 공공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의사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감염병 대응 관련 근무 경력자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 2021. 02. 16., 일부개정)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에서 경력인정범위를 인정

4. 복무조건 및 보수

□ 복무조건

- 채용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2년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최장 5년까지)

- 근무시간 : 주 40시간(09:00~18:00 근무, 12:00~13:00 중식시간)

※코로나19 관련 주말·공휴일 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하며 수당 지급함

- 근무부서 : 진료의사 : 보건행정과(서구보건소 내 1층 통합진료실)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주말·공휴일, 야간근무 등)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별표 13(연봉 및 연봉 한계액)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비 고
5급(상당)	83,632	기본연봉 ; 61,684 수당금액 ; 21,948

※ 최종연봉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하한액의 120%까지 협의할 수 있음

[참고] 5급 연봉 책정 방식(예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의료업무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합 계 액
5급상당 연봉액	61,684	21,948	83,632
연봉액 110% 책정시	67,852	21,948	89,800
연봉액 120% 책정시	74,021	21,948	95,969

※ 연봉 외 급여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함 (문의 ☎ 032-718-0601)

※ 공무원연금법 적용 (2018.9.21.자 시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자격기준 요건 등)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

□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경우 10일간 재
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경우 포함
 - *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 평정점수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6. 시험시행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1. 6. 18.(금) ~ 6. 28.(월)	2021. 6. 24.(목) ~ 6. 28.(월)	2021. 7. 7.(화)	2021. 7월 중	2021. 7월 중

- ※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seo.incheon.kr) 채용소식란에 공고
-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함께 기재 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시간,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나. **접수기간 : 2021. 6. 24.(목) ~ 2021. 6. 28.(월)**
-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서구청 총무과[인사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 주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 동봉
-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032-560-4104)를 통해 접수 확인을위한 전화 요망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 응시수수료 : 10,000원(5급 및 가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방문접수: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나. 이력서 1부. <별지제2호서식>

- 이력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제3호, 4호서식>

- ※ A4용지 각 3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첨부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
-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자격(면허)증 사본 1부.(추후 원본 확인 예정)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의사 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제5호서식>

아.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제7호서식>

차.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1부.<별지제8호서식>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총무과 인사팀(☎032-560-4104)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032-718-0602)